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e-Nego 시스템과 전자선화증권을 중심으로 —

Problems on Examining the Electronic Record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이창숙(Chang-Sook Lee)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강사

강원진(Won-Jin Kang)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교수

목 차

I. 서론	V. 해결 방안
II.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	VI. 결론
III. 전자선화증권의 심사 방법	참고문헌
IV.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에 기인한 문제점	Abstract

Abstract

A comprehensive electronic trade portal such as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e-negotiations and so on, is developed by the Korea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serviced by KTNET. The portal, so called u-TradeHub, formally started to provide its services on 22nd May, 2009.

If the shipper issues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negotiating bank examines it through the established e-Nego system. However, the issuing bank overseas cannot examine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because any interactive system does not exist. So, after the e-Nego,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gets automatically transformed into the paper-type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issuing bank examine paper B/L.

In process of examining documents, the beneficiary using electronic mean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may face some risks such as the corruption to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fter its issuance by the carrier, the corruption after e-Nego and the corruption after the presentation to the issuing bank.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problems on corruptions to occur in the middle of the examination process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suggestions how to solve them are discussed.

Key words : examin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letter of credit, e-Nego, corruption.

I. 서론

신용장거래에서 주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서인 상업송장과 물품인도의 증거서류인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가 종이기반으로 발행될 경우 데이터 재입력으로 인한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¹⁾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일치의 판단 기준으로서 엄밀일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또는 상당일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EDI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이 대신 전자라는 수단에 기반한 전자 형태의 서류가 발행될 경우 최초 1회의 자료 입력만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이한 형태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입력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거래의 핵심 서류인 선화증권²⁾은 권리증권성을 가지는 서류로서 전자화되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선화증권의 전자화는 종이선화증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무역에 따르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는 선화증권을 전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 왔다.

한국에서도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와 이비엘코리아(e-B/L KOREA)를 구축하여 2009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회원의 수가 적고,³⁾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선화증권을 이용한 매입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정보

1) UCP 600의 서설에 따르면, 불일치로 인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서류 중 약 70%가 첫 번째 제시에서 거절되고 있다. UCP 600 Introduction.

2) 찰스 디베티스타(Charles Debatista)에 따르면 신용장은 물품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3단계로 구분하여 주의사항을 언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둘째, 통지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을 때, 셋째 대금지급을 위한 선적서류를 제공할 때이다. Charles Debatista, "The New UCP 600 - Changes to the Tender of the Sellers's Shipping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Journal of Business Law*, 2007.06, p.331 ; 이와 같이 선화증권은 무역거래 시 대금지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3)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무역업체 100,295개 중 전자무역 이용자는 19,405개(KTNET 무역자동화 서비스 가입자로서 ID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p.17.

통신은 2010년 초 수출환어음매입 온라인 서비스(e-Nego)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매입은행에서는 e-Nego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발행은행에서는 국가 간 연계 구축망이 부재하여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e-Nego 과정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전자적 제시⁵⁾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제시 중에서도 uTradeHub 및 e-B/L KOREA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서류심사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전자선화증권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기존 연구 자료에 기초한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II.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

1. 전통적 서류심사 기준

전통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는 종이서류에 의한 것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과 제시된 서류 상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영미의 판례법을 기초로 성립된 엄밀일치의 기준(standard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기준(standard of substantial compliance)이 양립되어 적용되어 왔다.⁶⁾

먼저 엄밀일치는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게 적용되며, 그 이유는 수익자가 대금을 추심하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4) 시범서비스 참여기관 및 업체를 살펴보면 화주는 현대자동차, 전자신용장에는 외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금융결제원, 전자선화증권은 유코카캐리어스, 전자보험증권은 현대해상보험과 보험개발원, 전자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uTH(u-Trade Hub)현황 및 전망", 2010.2, p.14.

5)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p.47-67 ; 조성원,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 제시에 대한 매입은행의 내용검토의무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8호 제1권, 경주대학교, 2005, pp.223-243 ; 최준호, "신용장의 전자적 제시를 위한 eUCP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9권, 한국상품학회, 2003.08, pp.111-130.

6)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 검토",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02, p.496.

내에 서류상의 불일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규정한 정확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은행은 그러한 정확한 서류만을 수령하여야 한다.

UCP 규정에는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 및 상품의 명세와 제시된 서류에 나타나는 명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엄밀일치된 서류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⁷⁾

상당일치는 심사 대상의 서류, 기타 명시된 모든 서류 또는 그 신용장까지 제시하는 모든 서류에 폭넓게 적용되며, 신용장의 문면을 검토할 때 서류와 서류의 데이터 등이 다른 데이터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선적서류 중에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⁸⁾하여야 하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 서류에 기재되는 물품명세, 용역 또는 이행사항 등은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⁹⁾될 수 있다. 이는 서류 상호간의 내용이 무역거래의 근본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상당일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러한 엄밀일치와 상당일치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을 선정하여 서류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엄밀일치를 적용시킬 경우 상거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당일치를 적용시킬 경우에는 신용장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축 내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¹¹⁾

이에 따라 2002년 국제상업회의소가 200개 항에 걸친 새로운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ISBP)를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은행의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기준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¹²⁾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국제관습의 명문 규정과 학계의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현장에서는 서류일치성 여부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¹³⁾

7) 권 오, “UCP 600의 서류심사 기준과 eUCP 및 ISBP의 관련 규정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8호 제4권, 한국관세학회, 2007, p.5.

8) UCP 600, Article 18(c).

9) UCP 600, Article 14(e).

10) 권 오, 전제논문, p.4.

11) 김종철, “회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관례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09, p.204.

12)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 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06, p.145.

13) 예를 들어, 최근 업계의 수출보험계약 지급거절(unpaid) 사고 건에서 서정두 교수가 서면으로 공식의견을 피력한 46건

따라서 서류일치성의 판단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도 서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전자무역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계약의 성립에서 결제까지 단절 없는 국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자기록에 의한 심사

최근 전자무역의 발달로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전자신용장이 사용¹⁴⁾되고, 제시서류 또한 전자서류인 경우 은행은 전자적으로 제시된 전자기록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서류가 전자화됨에 따라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제시서류가 전자화됨에 따라 수출입업자와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최초 1회의 입력만으로 각종 서류의 발급과 확인이 용이해져 불일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불일치 수수료¹⁵⁾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한 경감될 것이다.

전자기록의 심사와 관련하여 eUCP에서는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이 외부 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 하이퍼링크에 있는 전자기록 또는 관련 시스템은 심사가 이루어질 전자기록으로 간주되고, 지시된 시스템으로의 접근실패는 불일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즉 국가 간의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발행은행은 uTradeHub 및 e-B/L KOREA를 통하여 전자선화증권에 접근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UCP에서는 전자기록이 외부 시스템의 하이퍼링크 또는 외부 시스템을 참조

중의 39건(84.8%)이 서류일치성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07.02, p.92.

- 14) 1974년에 대부분의 신용장은 메일, 전신 또는 텔렉스로 전달되었지만 현재는 SWIFT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Boris Kozolchyk,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and Related Documents of Titl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55, 1992, p.41 ; 무역업체는 전자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서류 관리의 편리 그리고 오류 감소 등과 같은 유효성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가영, “u-Trade 시대의 전자신용장(e-L/C)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8.09, p.152.
- 15) 은행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하는 횟수가 증대하자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일치 수수료를 폭넓게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마다 그 수수료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있어 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종철, “회환신용장 거래관행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12, p.92, p.102, p.107.
- 16)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55.

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외부 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한정하고 있지 않다.¹⁷⁾ 하이퍼링크는 텍스트 또는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하이퍼링크는 또 다른 웹 페이지를 가지게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하이퍼링크는 화물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인 시스템의 특정 웹 사이트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코드 또는 키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전자기록을 수신하는 것이다. 하이퍼링크가 활성화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코드 또는 키를 즉시 인식시켜 접근한 후 신용장상의 물품운송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를 확인한다. 이때 은행은 일단 정확한 페이지에서 종이운송서류를 송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전자 자료를 심사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서류 심사 시점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하여 지시된 시스템으로의 접근실패 및 변형은 불일치를 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실패는 운영을 위한 외부 시스템의 작동 오류이거나 또는 은행이 요구한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는 운영 시스템의 거절에서 비롯되며, 변형은 불법을 의도한 제3자에 의한 행위, 시스템 상호 간의 불호환성, 시스템 자체 결함 및 관리 부족 그리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실패 및 변형의 원인이 수익자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된 경우 즉 uTradeHub 및 e-B/L KOREA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선화증권일 경우 수익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전적으로 수익자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자 신용장거래에서는 전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의 접근 실패 및 변형으로 인한 불일치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서류심사 시 시스템의 작동 오류 및 제시된 서류의 변형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실패 및 서류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형식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⁹⁾ 접근 가능한 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형식에서 전자기록을 심사함에 있어 은행의 불능은 전자기록의 거절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²⁰⁾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²¹⁾

17) eUCP는 전자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eUCP는 특정 기술이나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사용될 기술이나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eUCP가 형식이나 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순환, “eUCP에 있어서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03, p.149.

18)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p.55-56.

19) eUCP, Article e4.

따라서 전자기록에 의하여 심사할 경우 전자적 제시에 대한 책임을 수익자에게만 전가하기보다는 신용장 독립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운용 기관에도 책임이 공적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전자선화증권의 심사 방법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서류심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e-Nego 시스템상에서 전자선화증권을 심사하거나 둘째, 종이선화증권 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매입은행은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된 uTradeHub 및 e-B/L KOREA를 통하여 매입²²⁾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매입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까지의 수출환어음 매입과정을 전자화하여 글로벌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출환어음매입 온라인 서비스(e-Nego) 시스템이 구축²³⁾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발행은행은 국가 간의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재 e-Nego 시스템은 시범 운영 단계에 있어 매입은 종이와 전자적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SWIFT 신용장에도 UCP 600을 준거규정으로 두고 있어 eUCP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 간 연계망의 구축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조만간 e-Nego 시스템이 정착될 것임에 틀림이 없고, eUCP 신용장이 발행되거나 eUCP를 준거규정으로 두고 있는 신용장이 발행될 경우 eUCP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CP의 적용을 전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0) eUCP, Article e6 ; 동 조항은 신용장에 요구되는 형식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56.

21)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56 참조.

22) 매입이란 상환이 지정은행에게 행해져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지정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UCP 600, Article 2.

23)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p.49.

1. e-Nego 시스템에 의한 서류심사

먼저 매입은행이 e-Nego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선화증권을 심사할 경우 uTradeHub 등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자무역을 구현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거래, 특히 선화증권과 관련하여서는 공인인증서를 재확인하도록 하여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선박회사와 은행 등의 기관은 전용선 방식을 채택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이나 적화보험증권의 경우는 소유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권리등록부(title registry : T/R)²⁴⁾에서 관리되며, 양도 및 매입 등의 방법 이외에는 소유권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자선화증권은 현재 e-Nego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으며 전자선화증권의 권리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선화증권 권리자의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e-Nego를 통한 매입 신청 시점에 전자선화증권의 소유권이 제한된다. 즉 양도 및 원본 출력이 금지되며, 무역업체가 원본을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e-Nego 프로세스가 완료된 시점에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는 원본 기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²⁵⁾

이러한 전자선화증권 심사 시 적용되는 규칙은 종이선화증권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볼레로의 경우 규약집²⁶⁾이라는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e-Nego 시스템은 uTradeHub의 독자적인 Rule이 아닌 UCP 600 및 eUCP, 현행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복수 선화증권의 발행을 인정하며, 모든 방식의 선화증권이 배서가 가능(기명식 선화증권의 배서 양도 가능)하다. 또한 선화증권과 적화보험증권의 표면 및 이면약관²⁸⁾을 포함하고 있다.²⁹⁾ 서명(명판) 및 약관은 무역업체와 선박회사 등이 사전에 uTradeHub에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종이선화증권과 동일한 문서를 사용하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24) 전자선화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계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25)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p.52.

26) 볼레로 규약집은 총 3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는 정의 및 해석, 제2편에는 일반규정, 제3편에는 볼레로 권리등록 그리고 부록에는 미국법 조항이 있다.

27)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소개 -e-NEGO 및 B/L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9,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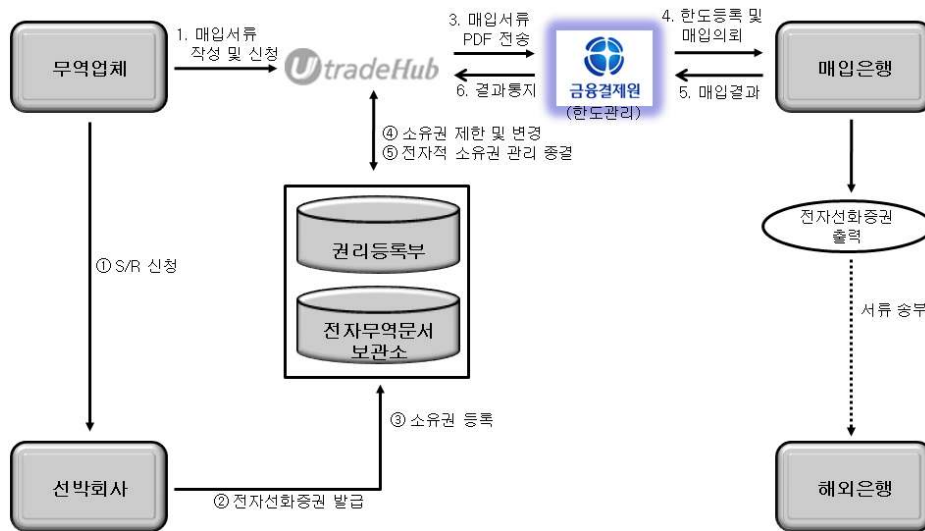
28) 이면약관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면이 아닌 다른 페이지로 구성된다. 법률상 약관은 어떠한 행태로 제공되어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ISBP의 제26항, 제27항에 의거하여 약관 페이지 상단에 선화증권 번호를 기입하고 하단에 전체 페이지 수와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고 발행자의 서명은 1쪽에 배서는 마지막 쪽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소개 -e-NEGO 및 B/L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9, p.9.

29) UCP 600에서는 선화증권의 약관을 생략할 수 있으나, 한국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손해보험 편에 규정된 약관 교부 의무로 인해 약관을 생략할 수 없다. 또한 종이문서로 전환될 경우 약관의 인자를 생략하는 경우 전자문서와 종이로 전환된 문서에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소개 -e-NEGO 및 B/L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9, p.9.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선화증권을 심사할 경우 종이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선화증권의 일부(日附), 사고 여부, 배서, 운임 지급 여부, 분할선적 및 환적에 관한 기재사항³⁰⁾ 등의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즉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서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eUCP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을 비롯하여,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은 e-Nego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거나 구축 중에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만 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³¹⁾ 현재는 e-Nego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UCP 600만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e-Nego 시스템이 해외은행과 연계가 되거나 또는 전자신용장에서 eUCP를 적용한다는 준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eUCP가 적용될 것이다.

[그림 1]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전자매입 흐름도



자료 :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p.52.

30) 김종철, 전계논문, p.206.

31) 화주인 현대자동차가 매입신청을 하고, 외환/신한/하나은행이 매입신청 심사 및 승인을 하며, 유코카캐리어스가 선적 요청서를 수신하고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e-Nego시스템의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적 수출환어음(e-Nego)시스템 구축완료 보고”, 2010.04.06, p.4.

2.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서류심사

매입은행은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e-Nego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발행은행은 국가 간의 연계망의 부재로 인하여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기초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입은행은 매입을 완료한 후 전자선화증권을 종이 형태로 출력하여 해외에 있는 발행은행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선화증권의 관리자가 uTradeHub를 통하여 화환어음의 매입을 요청하고, 은행이 이러한 매입을 승인한 경우 등록기관은 전자선화증권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³²⁾ 또한 매입은행이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등록기관이 피디에프(Portable Document Format : PDF)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서면선화증권을 매입은행에 송부하고 이를 매입은행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매입은행은 PDF 형태의 전자선화증권을 특수 전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해외에 있는 발행은행에게 송부하게 되며 발행은행은 전자선화증권이 아니라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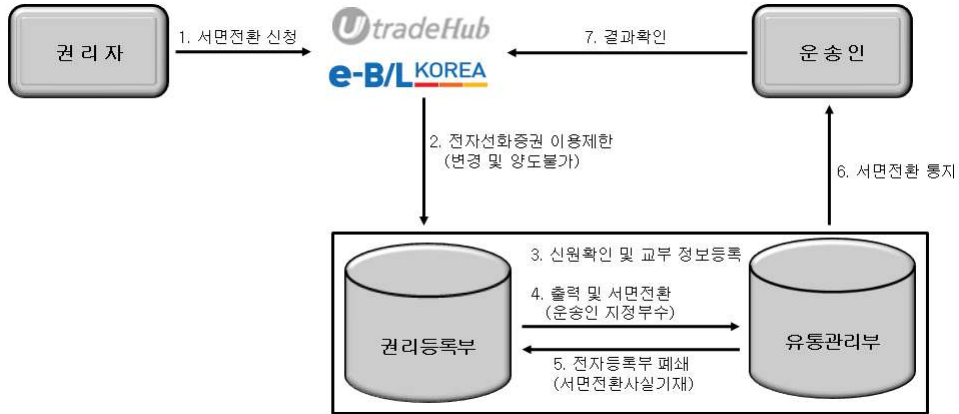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선화증권 심사 시 종이기반 서류심사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으로 인하여 UCP 600에 따라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초에 전자선화증권으로 발행되었더라도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전자적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eUCP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전통적인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가 일반적인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 서류가 법률상 완전하고 유효한지, 위조 또는 변조가 없는지를 오직 서류의 문면상의 기록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³³⁾ 하지만 전자무역으로 인하여 수출상이 작성한 서류 상호 간에는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서류 불일치로 인한 업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32) 매입은행이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을 송부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고, 등록기관은 전자선화증권 권리등록부상에 전자선화증권의 관리자를 매입은행으로 변경하게 된다.

33)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 A., 1989, p.60 ; 강호경·임목삼,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02, p.91.

[그림 2]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 흐름도



자료 :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선화증권(e-B/L) 소개자료」, 2009.07, p.13. 참조.

IV.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에 기인한 문제점

1. 발행 후 전자선화증권의 변형과 책임

uTradeHub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이었다. 불만족 응답의 주요 이유 중에서 시스템 불안정이 7.1%를 차지하고 있다.³⁴⁾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운용기관이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의 변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화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이 이러한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운송인은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³⁵⁾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변경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는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³⁶⁾하였으면 전자등록부에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한다.³⁷⁾

34) 정윤세,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현황 및 사용자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0권 제4호, 2009.11, pp.249-250 참조.

35)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와 같이 등록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전자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제3자인 KINET을 지정³⁸⁾하여 관리함으로써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변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표 1> 시스템 오류 분쟁현황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률
건수 (%)	2 (0.4)	4 (0.5)	4 (0.3)	12 (1.2)	13 (0.7)	6 (0.3)	10 (0.4)	11 (0.3)	10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7, p.35 ; 2008, p.37, 일부 발췌.

전자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오류 및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등록기관은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양도, 변경 및 서면전환 등 전자선화증권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보존한다.³⁹⁾ 그러나 전자선화증권에 의하여 심사할 경우 전자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오류 및 변형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자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이 문제시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용자는 등록기관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그러나 전자선화증권이 이용자가 접근 수단을 분실 또는 유출하여 발행된 경우,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발행된 경우, 이용자가 정보변경에 따라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등 등록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⁴¹⁾

하지만 전자라는 거래 수단의 특성상 이러한 사유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uTradeHub 및 e-B/L KOREA가 이용 약관을 마련하고 있지만 유사한 내용을 각각 다르게

36) 선화증권이 발행된 후에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서면 또는 선화증권에 기재하여 선화증권을 변경 또는 추가하면 그것은 무효이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원조건은 유효하다. U.S. Federal Bill of Lading Act, 1994, § 80108. Alterations and additions.

37)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38)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 법무부 고시 2008-131호, 2008.09.

39)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 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10년, 서면선화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선화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B/L Korea 이용약관, 제23조.

40) e-B/L Korea 이용약관, 제25조 제1항.

41) e-B/L Korea 이용약관, 제25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이트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이후 변형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수익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e-Nego 시스템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에 대한 책임이 수익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입된 등록기관과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운용 사이트의 개입은 전자무역의 특성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는 전자무역으로 인해 개입되는 당사자를 수용하여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책임 관계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2. 제시 이후 전자선화증권의 변형과 책임

전자신용장거래는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된 서류 양식에 입각한 거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형식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시형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표준적인 전자기록이 통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⁴²⁾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종이서류 이외의 수단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경우 공통의 ‘언어(language)’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합의된 약어 예를 들어 공통의 프로토콜, 메시지 신원확인, 합의된 약어나 자료 진술을 위한 코드, 메시지와 자료 요소 분리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환 상대방은 통신 절차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자기록의 변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락 가능한 메시지의 유형, 양당사자의 신원 확인, 사전 합의 프로토콜 또는 부호화 문자에 대한 합의에 관한 언급, 언어, 번역 및 교환 구조⁴³⁾ 등 사전에 파악하여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⁴⁴⁾

eUCP에서는 변형(corruption)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전자기록이 제공하는

42) 방희석·나정호, “eUCP 도입배경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11, p.136 참조.

43) Emmanuel T. Laryea, “Facilitating Paperless International Trade : A Survey of Law and Policy in Asia”,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19, No.2, July 2005, pp.124 ~ 125.

44)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통합되거나 또는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만이 데이터 형식이 모두에게 수용될 것이다. Roberto Bergami, “eUCP : A Rev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Vol.8, 2004, p.29.

전자기록에 잠재한 모든 데이터의 왜곡과 분실을 포함하려는 것이다.⁴⁵⁾ 전자기록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노출되어 해당 파일을 열 수 없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제시된 이후 변형될 위험 가능성이 존재⁴⁶⁾한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⁷⁾ 전자선화증권을 심사할 때 은행은 수신한 전자선화증권이 변형된 것으로 보일 경우, 제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전자선화증권에 대하여 재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절차는 대체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서류의 유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발행의뢰인을 보호하면서,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을 줄이려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⁴⁹⁾

은행은 전자선화증권의 외관상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수신, 인증 및 전자선화증권의 확인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처리의 사용에 의하여 수신된 문서에 대하여 적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또는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외관상 정보의 완전성과 무변조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⁵⁰⁾

uTradeHub 및 e-B/L KOREA를 통하여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될 경우 선화증권의 접속중계부, 권리등록부 및 유통관리부를 통하여 변경, 양도, 서면전환 등의 절차⁵¹⁾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의 진정성은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전자기록이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비록 그 전자기록이 수신 가능하더라도, 수신자의 수신 설비에 있는 다른 데이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는 수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eUCP는 전자기록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불문하고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변형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제시자인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하는 정보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전자기록의 변형

45) James E. Byrne and Dan Taylor, *ICC Guide to the eUCP - Understanding the electronic supplement to the UCP 500*, ICC Publishing S.A., 2002, p.139.

46) 전순환, “eUCP에 있어서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03, pp.156-157.

47) eUCP, Article e5(f).

48) 수신한 전자기록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전자기록은 유효한 제시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정지되며, 제시자가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할 때 재개된다. eUCP, Article e11(b)(i);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다시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며, eUCP, Article e11(b)(iii); 어떠한 최종기간도 연장되지 아니한다. eUCP, Article e11(b)(iv).

49) James E. Byrne and Dan Taylor, *op. cit.*, p.138.

50) eUCP, Article e12.

51)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선화증권(e-B/L) 소재자료”, 2009.07, p.5.

이 초래된 경우에도 모든 위험부담을 수익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이러한 eUCP를 적용할 경우 수익자가 은행의 정보 시스템의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⁵²⁾

또한 UCP 600에서는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 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구성 요소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및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⁵³⁾하여 근거계약의 내용 등 외부 자원의 이용은 신용장 독립성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이에 따라 전자무역에 따른 화주와 uTradeHub, 등록기관과의 이용 약관 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더욱이 은행 자체의 시스템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자기록의 변형이 초래되었을 경우 그 전자기록의 변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규명하는 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⁵⁵⁾

이처럼 발행 이후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은 화주와 해당 사이트 운용 기관, 그리고 매입은행이 관계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해결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 이후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은 해외에 있는 발행은행 등이 개입됨으로써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이 수익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거절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어려우며, 입증 또한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매입은행은 누구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시된다.

3. 서면전환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의 변형과 책임

선화증권의 권리자인 화주에 의하여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서면선화증권을 권리자에게 교부하고 그 이면에 전자선화증권의 양도 등록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기관은 서면선화증권을 교부한 때 등록부상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더 이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등록부를 폐쇄한다.⁵⁶⁾

52) 방희석·나정호, 전계논문, p.136.

53) UCP 600, Article4 (a), (b).

54)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55.

55) 방희석·나정호, 전계논문, p.136.

56)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은 등록기관이 전자선화증권을 피디에프(Portable Document Format : PDF)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이를 특수 전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형태가 서면선화증권이 되는 것이다. 위조 및 변형 방지를 위하여 동일 규격 유가증권 가쇄 등록업체⁵⁷⁾를 이용하여 위조 방지용 특수 인쇄 용지에 출력하며, 이 외에도 워터마크, 선화디자인, 홀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은 전자선화증권이 e-Nego 시스템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의한 화환어음의 매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화주가 서면전환을 요청한 경우 화주와 등록기관 간에 책임 관계가 형성되며, 서면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을 화주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정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승인한 이후 자동으로 서면전환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e-Nego 과정에서 변형에 기인하여 불일치가 구성되어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은 과연 화주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V. 해결 방안

전자선화증권의 변형과 관련하여 eUCP 규정에서 제시 이후의 변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을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이후와 제시 이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불문하고 변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실상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이 제시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제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에 대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수출업자의 최초 입력 자료인 상업송장과 수입업자의 최초 입력 자료인 전자신용장을 PDF화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⁵⁸⁾ 전자무역은 최초 입력 자료에 의하여 후속되는 각종 서류인 전자선화증권, 보험증권 등이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

57) ISO 9001:2000 인증업체.

58) 현재 신용장 통지 업무를 포함한 8종 업무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있다.

에서 변형이 발생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두지 않는 이상 변형된 부분 및 원인을 발견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상업송장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증명이 가능하다.⁵⁹⁾ 전자신용장의 경우에는 SWIFT를 통하여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전자신용장의 조건이 서류심사 시 변형이 된 경우 불일치로 인해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데이터를 PDF화하여 보관해 둔다면 추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또한 전자선화증권을 서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한 경우 매입은행은 전자선화증권으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미 수출상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상태이지만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으로 심사한 발행은행은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는 이러한 불일치를 원래대로 수정하여 재제시를 하여야만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이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최초의 입력 자료로 작성된 기본 서류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여 둔다면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난 경우 등 필요시 원본과 전자기록을 비교하고 변형된 부분을 찾아 수정 보완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선화증권의 운용 사이트인 uTradeHub와 e-B/L KOREA의 이용 약관을 통일하여야 한다. uTradeHub와 e-B/L KOREA는 운영 주체가 동일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 관계에 있다. 즉 uTradeHub는 e-B/L KOREA에서 제공하는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역, 물류, 은행, 통관,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약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uTradeHub에서는 손해배상과 면책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규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자는 ... (중략) ... 배상하여야 합니다”는 서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¹⁾ 하지만 e-B/L KOREA에서는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5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60) 전자신용장의 사용 및 전자적 제시가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아 변형이 거의 없지만 향후 전세계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무역을 할 경우 변형의 가능성이 높고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61) 제27조 (손해배상)

1.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금액이 무료인 동안에는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uTradeHub에 비하여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⁶²⁾ 전자무역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전자라는 수단의 편리함과 그 편리함을 누리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안 요소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따라 이용 약관이 다른 경우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이용 약관을 숙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일하여 무역업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운용 기관의 특성상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uTradeHub의 이용 약관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한다면 이용자는 편리하게 전자무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자거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⁶³⁾ 이와는 별개로 전자라는 특성과 연계된 전자선화증권의 변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법의 심사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무역은 등록기관이나 운용 사이트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관계자를 신용장의 예외적인 기본 당사자로 eUCP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책임 관계에 대한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28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 3) 이용자가 제3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회사의 관리 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62) 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이용자는 등록기관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수단을 분실 또는 유출하여 발생된 경우
 2.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
 3. 이용자 정보변경에 따라 발생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등록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63) 그러나 UCP 제34조에서는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은 서류의 외관상 신용장 조건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형식적 심사 의무는 있으나 서류의 서명의 위변조와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조영철,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23집,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7, p.386.

VI. 결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사용에 따른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거래에 신용장이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매도에 의해 제공된 서류의 70% 정도가 서류의 불일치 때문에 첫 번째 제시에서 은행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어, 무역거래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은행은 불일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 당사자는 대금결제 절차가 신속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대금결제 방안이 마련되길 원한다.⁶⁴⁾

신용장거래에서 전자무역, 특히 전자선화증권이 잘 활용될 수만 있다면, 서류 불일치로 인한 대금지급 거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⁶⁵⁾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그 발행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기의 위험 가능성이 존재⁶⁶⁾하는 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어 매입은행을 통하여 전자선화증권의 전자매입이 가능하지만 국가 간 연계망의 부재로 인하여 발행은행은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만 한다⁶⁷⁾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에서 기인한 책임 문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이후 변형이 발생한 경우이다.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은 제3자인 등록기관을 이용하여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변형에 대비한 이용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변형이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 입장에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Nego 시스템에 의한 매입이 이

64) Janet Ulph, "The UCP 600 : Documentary Credit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Law*, 2007, p.356.

65) 세계 교역량 중 10~20%가 신용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80%는 청산계정(open account)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Ibid.*, p.356.

66) Felix W.H. Chan, "In Search of a Global Theory of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China's Position on the Rotterdam Rule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0, April, 2009, pp.186-187.

67) 향후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파일도 전송이 가능한 SWIFT의 FileAct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입은행에서 해외 발행은행으로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연계망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은행 간 별도의 약정 및 은행 확인을 위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해외 발행은행이나 추심은행으로의 발송에 필요한 특사 배달료도 절감할 수 있다.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소개 -e-NEGO 및 B/L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9, p.21.

루어진 경우 불일치에 대한 책임이 수익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제시 이후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이다. 제시 이후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은 해외에 있는 발행은행 등이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이 수익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거절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책임 관계를 입증하는 것조차도 곤란하다. 또한 발행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시 매입은행은 누구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시된다. 특히 eUCP에서는 제시 이후 수익자와 관계없이 변형이 일어난 부분까지 수익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일방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서면전환에 따른 전자선화증권의 변형이다. 전자선화증권의 서면전환은 전자선화증권이 e-Nego 시스템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의한 화환어음의 매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승인한 이후 자동으로 서면전환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서면전환된 전자선화증권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e-Nego 과정에서 변형에 기인하여 불일치가 구성되어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입은행이 화주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선화증권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의 특성상, 변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만약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업자의 최초 입력 자료인 상업송장과 수입업자의 최초 입력 자료인 전자신용장을 PDF화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선화증권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종이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최초의 입력 자료로 작성된 기본 서류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여 둔다면 필요시 비교하여 변형된 부분을 찾아 수정 보완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선화증권의 운용 사이트인 uTradeHub와 e-B/L KOREA의 이용 약관을 통일하여야 한다. 두 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동일하고 당사가 간의 전자서비스의 이용관계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일하여 무역업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운용 기관의 특성상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uTradeHub의 이용약관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한다면 이용자는 전자라는 수단 이용에 따른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전자거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전자라는 특성과 연계된 전자선하증권의 변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법의 심사 기준이 신용장 방식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eUCP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전자선하증권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책임 관계를 규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이를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UCP 규정에서도 전자적 제시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 지속될 경우 전자무역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와 제3자에 기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자무역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에 기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절차를 확립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 절차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전자선하증권의 제시 및 심사가 원활해져 전자선하증권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신용장거래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eUCP 제정 이후 전자적 제시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06, pp.47-67.
- _____,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 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06, pp.141-173.
- _____,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 검토”,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02, pp.495-513.
- 강호경·임목삼,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 무역상무학회, 2009.02, pp.79-102.
- 권 오, “UCP 600의 서류심사 기준과 eUCP 및 ISBP의 관련 규정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8호 제4권, 한국관세학회, 2007, pp.1-20.
- 김종철, “화환신용장 거래관행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

- 상학회, 2008.12, pp.91-109.
- _____,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판례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09, pp.201-229.
- 방희석·나정호, “eUCP 도입배경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11, pp.121-142.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829호, 2008.06.20 제정, 2008.08.04 시행.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07.02, pp.91-118.
- 오가영, “u-Trade 시대의 전자신용장(e-L/C)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8.09, pp.133-153.
-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 이용약관, 2008년 4월 1일 시행.
- 이비엘코리아(e-B/L Korea) 이용약관, 2010년 2월 8일 시행.
- 이창숙, “국제무역결제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수리요건과 운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02.
- 전순환, “eUCP에 있어서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03, pp.145-168.
- 전자무역추진센터, “uTradeHub 소개 -e-NEGO 및 B/L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9.
- 정윤세,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현황 및 사용자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0권 제4호, 2009.11, pp.231-257.
- 조성원,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 제시에 대한 매입은행의 내용검토의무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8호 제1권, 경주대학교, 2005, pp.223-243.
- 조영철,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23집,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7, pp.383-403.
-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적 수출환어음(e-Nego)시스템 구축완료 보고”, 2010.04.06.
-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pp.67-95.
- 최준호, “신용장의 전자적 제시를 위한 eUCP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9권, 한국상품

- 학회, 2003.08, pp.111-130.
- 한국무역정보통신, “uTH(u-Trade Hub)현황 및 전망”, 2010.02.
- _____, “전자선하증권(e-B/L) 소재자료”, 2009.07.
- _____, 「전자무역서비스 안내」, 2009.01.
- _____,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이용약관, 2007년 4월 1일 시행.
- Bergami, Roberto, “eUCP : A Rev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Vol.8, 2004, pp.23-36.
- Boris, Kozolchyk,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and Related Documents of Titl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 Vol.55, No.3, Duke University, Summer 1992, pp.39-101.
- Byrne, James E. and Dan Taylor, *ICC Guide to the eUCP - Understanding the electronic supplement to the UCP 500*, ICC Publishing S.A., 2002.
- Chan, Felix W.H., “In Search of a Global Theory of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China's Position on the Rotterdam Rule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0, April, 2009, pp.185-202.
- Debattista, Charles, “The New UCP 600 - Changes to the Tender of the Sellers's Shipping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Journal of Business Law*, 2007.06, pp.329-354.
- Laryea, Emmanuel T., “Facilitating Paperless International Trade : A Survey of Law and Policy in Asia”,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19, No.2, July 2005, pp.121-142.
-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1.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 Ulph, Janet, “The UCP 600 : Documentary Credit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Law*, 2007, pp.355-377.
- USA Federal Bill of Lading Act, 1994.